



## □ 기구(본청) 직제 순서 변경

- 행정담당관 부군수 직속
- 기획재정국(6) 기획예산과 ⇨ 인재육성과 ⇨ 복지정책과 ⇨ 가족복지과 ⇨ 세정과 ⇨ 회계과
- 관광경제국(5) 관광정책과 ⇨ 문화예술과 ⇨ 올림픽체육과 ⇨ 경제과 ⇨ 민원토지과
- 도시안전국(7) 도시과 ⇨ 허가과 ⇨ 건설과 ⇨ 안전교통과 ⇨ 산림과 ⇨ 환경과 ⇨ 현안사업추진과

## □ 국·실과 단위 개편사항

### ① 기획예산과

- 기능 약화(공모사업) 분야 ⇨ 동원육영회 유치·재정기능 통합(재정지원)
- 기획재정국 소속 배치를 통한 전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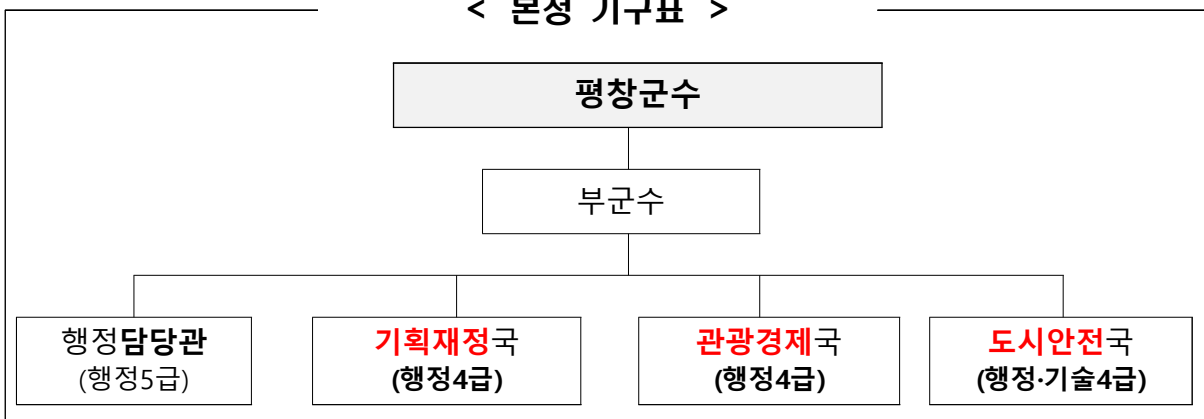
### ② 행정담당관

- 국 중심의 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 독립(인사·근평 등 공정성 확보)
- 노사관리(노무관리) + 사회단체(행정) 통합 ⇨ 단체협력(노사 + 단체관리)

### ③ 국 신설(+1) ⇨ 국장 통솔범위 완화 및 업무 책임성 강화

-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국 설치 상한 폐지(국 신설 자율화)
- 국 소관부서 감축으로 업무 전문성 및 국·과장 책임 강화

< 본청 기구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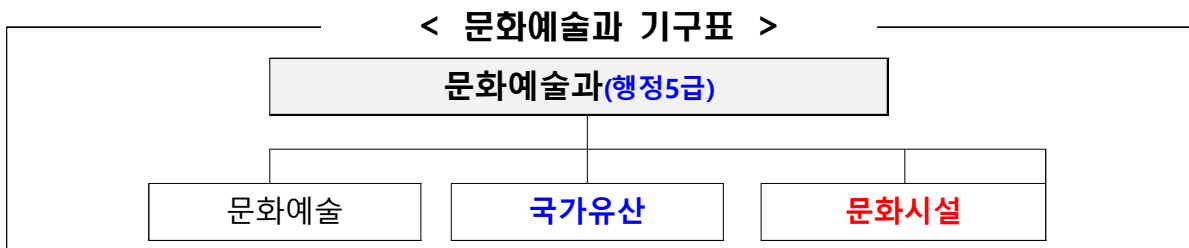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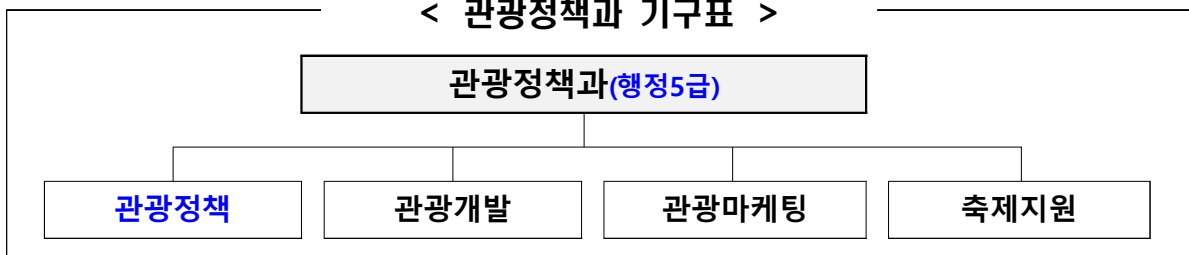


④ 정책담당관(기능싹퇴 분야 ⇨ 폐지)

- 민선8기 전반기 총괄 관리조정 및 정책보좌 역할 수행
- 정책담당관 소속 업무 이관(총괄정책팀, 사업발굴팀 ⇨ 기획예산과)
- 정책담당관 소속 부서 이관(인구정책팀 ⇨ 기획예산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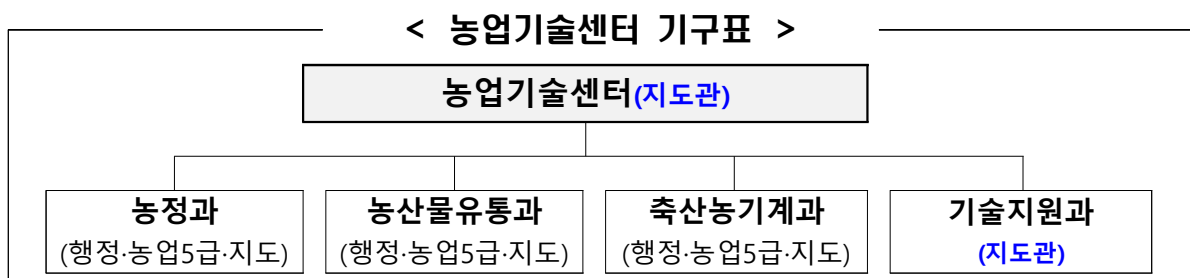
⑤ 관광문화과(부서 분리 ⇨ 관광·문화분야 기능 강화)

- 관광·문화업무 분리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력 강화
- 관광기획팀 ⇨ 관광정책팀, 문화재팀 ⇨ 국가유산팀 명칭 변경
  - ※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팀 명칭 변경
- 문화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화시설팀 신설



⑥ 농업기술센터

-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
  - ⇨ 농업기술센터 소장·기술지원과장 직위 지도관 단수 책정



## □ 담당 단위 개편사항

### ① 담당 명칭변경

부서명	변경 전	변경 후	주요 내용
기획예산과	공모사업	재정지원	· 공모사업 + 재정업무(예산팀 소관)
행정담당관	노무관리	단체협력	· 사회단체 + 노사관리
올림픽체육과	스포츠마케팅	시설운영	· 시설운영팀 신설 및 마케팅 업무 이관
관광정책과	관광기획	관광정책	· 부서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
문화예술과	문화재	국가유산	·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
건강증진과	건강증진	평창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평창·미탄)

### ② 담당 신설

부서명	담당	주요 내용
문화예술과	문화시설	· 문화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
올림픽체육과	시설운영	· 체육시설 관리·운영
건강증진과	대화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방림·대화)
건강증진과	봉평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봉평·용평)

※ 진부권역(건강생활지원센터)

### ③ 담당 폐지

부서명	담당	주요 내용
정책담당관	총괄정책	· 기획팀 업무 중첩(기능 쇠퇴)
정책담당관	사업발굴	· 공모사업팀 업무 중첩(기능 쇠퇴)
건강증진과	정신건강·치매안심	· 정신·치매 통합 및 이관(의료지원과)
의료지원과	건강검진	· 의료관리팀 통합 운영

### ④ 담당 이관

기능(업무)	현 부서	이관 부서	주요 내용
인구정책	정책담당관	기획예산과	·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재해예방	건설과	안전교통과	· 사회·자연재난 업무 소관부서 일원화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4. 22. ~ 2024. 5. 12.) 결과, 의견 2건(별첨)
  - 평창군 공고 제2024-637호, 행정과-9780(2024. 4. 19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7855(2024. 5. 2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7855(2024. 5. 20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7851(2024. 5. 21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실-7973(2024. 5. 22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8095(2024. 5. 24.)호]

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**실·과장·담당관**”을 “**담당관·과장**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**행정지원국, 경제건설국**”을 “**기획재정국, 관광경제국, 도시안전국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**기획실**”을 “**행정담당관**”으로 한다.

② 행정담당관은 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**행정지원국에 두는 과**)”를 “(**기획재정국에 두는 과**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행정지원국에 행정과, 올림픽체육과**”를 “**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인재육성과**”로, “**민원토지과, 세정과, 회계과, 인재육성과**”를 “**세정과, 회계과**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행정지원국장**”을 “**기획재정국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조까지를 제6

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호(중전의 제18호) 중 “인사·조직·올림픽·체육행정·복지·민원·세무·교육”을 “기획·교육·복지·세무·회계”로 한다.

2. 기획, 예산, 법무, 감사, 홍보,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

3.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관광경제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, 올림픽체육과, 경제과, 민원토지과를 둔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건설국”을 “관광경제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,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, 제6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7호를 제21호로 하며, 같은 호(중전의 제27호) 중 “문화관광·인허가·경제·일자리·환경·산림·안전·재난방재·건설행정·도시개발·경관”을 “관광·문화·올림픽유산·체육·경제·민원”으로 한다.

7.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
8. 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

9.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

10.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11.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12.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13.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14.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5.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6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, 공장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17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18. 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
19. 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
20.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, 허가과, 건설과, 안전교통과, 산림과, 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.

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4. 인·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5. 건축·농지·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6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

7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·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
9. 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
10.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11. 자연휴양림,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
12.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13.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
14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·운반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의 도시개발·경관·인허가·건설행정·안전·재난방재·산림·환경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 중 “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”를 “군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농산물유통”을 “농산물유통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축산농기계”를 “축산농기계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기획재정장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, 관광경제국장, 도시안전국장, 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”을 “도시안전국장, 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경제건설국장”을 “도시안전국장”으로 한다.

⑦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경제건설국장”을 “관광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⑧ 평창군 문화예술·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경제건설국장”을 “관광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⑨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경제건설국장, 관광문화과장”을 “관광경제국장, 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⑩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실·과장, 담당관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장”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“실·과·소장, 담당관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한다.

⑪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9조제1항 중 “실·과장, 담당관”을 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⑫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실과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, “실·과·소장, 담당관”을 “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하며, 제11조제2항 중 “실·과·소·직속기관·사업소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⑬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실·과·소·단장”을 “국·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한다.

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0조제3항 중 “**실·과·단장**”을 “**부서장**”으로 한다.

⑮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⑯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3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⑰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호 중 “**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**”으로 한다.

⑱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3호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⑲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㉑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**농산물유통과장, 기획실장**”을 “**농정과장, 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㉒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실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행정과”를 “행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기획실장, 행정과장, 관광문화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, 행정담당관, 관광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㉓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㉔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㉕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㉖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㉗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“행정과장”을 “행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㉘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㉙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③0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**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**”으로 한다.

③1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**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**”으로 한다.

③2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기획실장**”을 “**기획예산과장**”으로 한다.

③3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**행정과장**”을 “**행정담당관**”으로 한다.

③4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**행정과장, 관광문화과장**”을 “**행정담당관, 관광정책과장**”으로 한다.

③5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민원토지과장, 관광문화과장**”을 “**기술지원과장, 관광정**

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⑥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⑦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⑧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관광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⑨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관광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①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관광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②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관광문화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③ 평창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호 중 “기획담당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④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업무 부서장”으로 한다

④5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경제체육과장”을 “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④6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7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의료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④8 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가족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                     ①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의 국장, 실·과장·담당관, 직속기관의 장 및 읍·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 <p>제3조(국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, 경제건설국을 둔다.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① 군수 밑에 정책담당관을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신 설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부군수 밑에 기획실을 둔다.</p> 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과, 올림픽체육과, 복지정책과, 가족복지과, 민원토지과, 세정과, 회계과, 인재육성과를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</p>	<p>제2조(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                    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담당관·과장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기획재정국,                      관광경제국, 도시안전국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&lt;삭 제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행정담당관은 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① ----- 행정담당관-----.</p> <p>제5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<b>인재육성과</b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세정과, 회계과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기획재정국장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·6. (생략)</li> <li>7. <u>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8. <u>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9. ~ 11. (생략)</li> <li>12. <u>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, 공공청사,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13. <u>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14. <u>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15. <u>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16. <u>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</u></li> </ol>	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기획, 예산, 법무, 감사, 홍보,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p>4.·5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6. ~ 8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 <p>9. <u>공유재산</u>-----</p> <p>---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관한 사항</u></p> <p>17. <u>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8. 그 밖의 <u>인사·조직·올림픽·체육행정·복지·민원·세무·교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<u>경제건설국에 관광문화과, 허가과, 경제과, 환경과, 산림과, 안전교통과, 건설과, 도시과,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</u> <u>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</u> <u>사항</u></p> <p>9. <u>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</u> <u>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물가안정, 소비자보호 공장</u> <u>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10. ----- <u>기획·교육·복지</u> <u>·세무·회계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관광경제국에 두는 과) ① <u>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, 문화</u> <u>예술과, 올림픽체육과, 경제과,</u> <u>민원토지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관광경제국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·6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</p> <p>7. <u>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</u> <u>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</u> <u>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</u> <u>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11. <u>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</u>	11. <u>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/u>
12. <u>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	12. <u>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
13. <u>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	13. <u>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</u> <u>에 관한 사항</u>
14. <u>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</u>	14. <u>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</u> <u>사항</u>
15. <u>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·운반에 관한 사항</u>	15. <u>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</u> <u>에 관한 사항</u>
16. <u>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</u>	16. <u>물가안정, 소비자보호, 공장</u> <u>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</u>
17. <u>자연휴양림,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	17. <u>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</u> <u>사항</u>
18. <u>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</u>	18. <u>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</u> <u>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
19. <u>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사항</u>	19. <u>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</u> <u>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</u>
20. <u>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성</u> <u>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</u> <u>관한 사항</u>	20. <u>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</u> <u>시행에 관한 사항</u>
21. <u>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</u> <u>사항</u>	<삭 제>

현행	개정안
<p>22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23. 자연재해·풍수해 관련 재난관리,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24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25.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26. 건축·농지·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27. 그 밖의 문화관광·인허가·경제·일자리·환경·산림·안전·재난방재·건설행정·도시개발·경관에 관한 사항</p>	<p>21. ----- <u>관광·문화·올림픽유산·체육·경제·민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, 허가과, 건설과, 안전교통과, 산림과, 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. 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인·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건축·농지·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·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<u>자연휴양림,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라 <u>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</u> 등을 <u>관장하도록</u> <u>군에</u>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농산물유통</u> 가. ~ 바. (생략)</p> <p>3. <u>축산농기계</u> 가. ~ 마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및 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<u>13.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4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·운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5. 그 밖의 도시개발·경관·인허가·건설행정·안전·재난방재·산림·환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0조(설치) ①----- ----- ----- <u>군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소관사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농산물유통과</u>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축산농기계과</u>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설치)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(이하 “출장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설치) ① 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입법예고 결과

## ○ 제출의견

제출기관(부서)	주요내용	비고
평창군의회 (사전설명)	· 행정담당관 ⇨ 부군수 직속 개편(찬성)	
	·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 분과(찬성)	
	· 인구정책팀 ⇨ 기획예산과 이관	
	· 도서관팀 ⇨ 문화예술과 부적합	
인재육성과	· 인재육성과 ⇨ 기획재정국 소속 변경 건의	
	· 인구정책팀 ⇨ 인재육성과 소속 부적합	
	· 도서관팀 ⇨ 인재육성과 존치(문화예술과 이관 반대)	

## ○ 검토결과

제출기관(부서)	검토결과	결과
평창군의회 (사전설명)	· 행정담당관(행정과) ⇨ 부군수 직속 개편(찬성)	반영
	·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 분과(찬성)	반영
	· 인재육성과 소속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변경	반영
	·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⇨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· 문화예술과 3팀(문화예술, 국가유산, 문화시설) 운영	반영
인재육성과	· 관광경제국 소속 인재육성과 기획재정국 소속 변경 ▶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 업무가 복지정책과, 가족복지과 업무협의 잦은 상황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 국 변경	반영
	· 인재육성과 소속 인구정책팀 기획예산과 소속 변경	반영
	·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⇨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· 문화예술과 3팀(문화예술, 국가유산, 문화시설) 운영	반영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영배
연락처	(033) 330 - 2210